

이천시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4. 11. 22(월)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9일
다. 상정일자 : 제73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제3차(2004. 11. 20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시장이 관掌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삭제되거나 재분장된 사무에 대하여 개정(위임사무의 관련법규의 폐지 및 개정, 직제개편에 의한 분장사무개정 및 읍·면·동분장사무의 개정에 의하여)

나. 주요골자

- 문화공보담당관의 위임사무 “공연에 관한 권한” 삭제(근거법규의 폐지에 의함)
- 주민지원과의 위임사무 “인장업에 대한 권한” 삭제(근거법규의 폐지에 의함)
- 세무과의 위임사무 “지방세(시세)에 관한 권한”的 수임기관 읍·면·동을 읍·면으로 개정(동의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)

- 환경보호과의 위임사무 “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권한” 신설(직제개편에 의함),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, 야생 동식물 관련업무 및 외래 동·식물 퇴치관련 업무 삭제
- 폐기물관리과의 위임사무 “폐기물에 대한 권한 중 ”쓰레기봉투판매” 사무의 삭제 “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권한” 삭제 (직제 개편에 의함)
- 사회복지과의 위임사무 “매화장에 관한 권한”의 개정, “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, 이미용업에 관한 권한, “공중위생업에 관한 권한,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권한,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” 삭제, 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권한,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,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권한”신설 (근거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의함)
- 농림과의 위임사무 “산림에 관한 권한”중 입산허가를 입산신고로 개정,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(허가)발급과 반출확인용 국인타기사무의 삭제(근거법규의 폐지), 임야의 임목벌채신고 및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신고 사무를 삭제(시 본청으로 이관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해수)

- 이천시사무의 읍·면·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련법규의 폐지 및 개정과 직제개편에 의한 분장사무의 개정 및 읍면동 분장 사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